

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2444호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3. 제출일자 : 2025년 2월 3일
4. 회부일자 : 2025년 2월 5일

II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

III. 주요내용

- 가.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위원 임기 규정 삭제
- 나. 여성기업 지원 관련 안건 발생 시 위원회 소집 및 소집사유 종료 후 위원회 해산 규정 신설
- 다. 기타 문구 정비

IV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1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됨.

2. 서울시 여성기업지원 사업 현황

- 정부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창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지난 1999년 6월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여성기업법”)을 제정하여 여성기업에 불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하고,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- 이에 서울시는 여성기업법을 근거로 ▶차별적 관행의 시정 요청, ▶종합계획의 수립, ▶실태조사, ▶여성기업 지원 ▶여성기업 주간 등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동 조례를 제정함(2017.1.5.).
- 또한 서울시는 현재 여성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▶창업 활성화, ▶자금 지원, ▶판로 지원 ▶기반 조성 분야에서 6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.

< 서울시 여성기업 지원 사업 주요 내역 >

추진분야	추진과제	소관부서
창업 활성화	①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	양성평등담당관
	② 여성창업플라자 운영	
	③ 여성기업 입주 가산점 부여	창업정책과, 창조산업과
자금 지원	④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	소상공인정책과
판로 지원	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	경제정책과
기반 조성	⑥ 여성기업인 의견 수렴	

3.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비상설화

- 안 제8조는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기 위해 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안전 발생시 위원회를 소집한 후 소집사유 종료 후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여성기업지원위원회) 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및 임명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5. 그 밖에 여성기업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</p> <p>⑤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단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⑥ <u>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</u> 2. <u>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</u> 3. <u>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</u> 4. <u>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</u></p> <p>⑦ <u>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u></p> <p><신 설></p>	<p>제8조(여성기업지원위원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-----사람</p> <p>⑤ <u>위원회는 여성기업 지원 안전 발생 시 소집하고, 소집사유 종료 후 해산한다.</u></p> <p>⑥ <u>위원의 해촉,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.</u></p> <p>⑦ <u>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 <p>⑧ <u>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</u></p>

- 동 위원회는 ▶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·평가, ▶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사항, ▶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, ▶그 밖에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해 2022년 신설됨.
- 현재 위원회는 9명의 위원(임명직 2명¹⁾, 위촉직 7명²⁾)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임기는 2년(2024. 2. 1 ~2026. 1. 31)임.
- 그러나 현행 조례는 정기회의 등 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, 안전 발생 시에만 회의를 개최하여 왔고, 실제 동 위원회는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1차례만 회의가 개최되는 등 그 운영이 형식화되어 왔음.

< 여성기업지원위원회 개최 실적 >

연 도	차 수	개 최 일	주요 안건
2022년	제1차 (정기)	5.24.(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2년도 여성기업 지원사업 계획 보고 - 사업계획 논의 및 발전방안 모색 등 - 위원장·부위원장 선출
2023년	제1차 (정기, 서면)	3.23.(목)~ 3.30.(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3년도 여성기업 지원사업 계획 보고 - 사업계획 논의 및 발전방안 모색 등

- 이에 서울시는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에 근거³⁾하여 서울시에 설치된 위원회 중 그 실적이 부진하거나

1) 경제실장, 여성가족실장

2) 여성경제단체 3명, 서울연구원 1명, 중소기업유관기관 1명, 정책·홍보 2명

3)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4조(위원회 활동 점검 등) ① 시장 등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시장 등은 위원회 운영의 시정·보완 및 통·폐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
2. 위원회의 통·폐합 등 정비에 관한 사항
3. 위원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
4.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사항

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·폐합하는 등 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해왔음.

<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정비 권고 사항⁴⁾ >

2023년	2024년	2025년
통합 ⁵⁾	비상설화	비상설화

-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개최 실적이 부진했던 동 위원회를 비상설 화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하겠음.

입법조사관	연락처
김혜진	02-2180-8057

4)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계획(2023.3.31./ 2024.2.2./ 2025.2.6.)

5) 유망중소기업 인증 정책위원회와 통합 권고